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수입증지 환매금지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나. 개정이후('01. 6. 18.)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로 띄어 씀.
- 나. 수입증지의 발행 방법,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종류, 인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증지진위 조사, 증지의 소인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수입증지의 환매, 교환, 출납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바. 기타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3.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계기로 발행하는 증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8조(증지판매인) 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제9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계약신청내용확인표에 따라 그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증지의 정가 판매할 것
2. 민원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의 비치할 것
3. 판매인의 성명 및 주소,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할 것
4. 판매인이 증지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 제출할 것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수입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 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증지수령증을 받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 증지를 환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일일결산시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증지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증지의 소인) ① 증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8조(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환매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증지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 시금고에서는 제3항의 수입증지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3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19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은 보유중인 증지가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20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 시금고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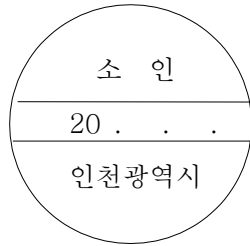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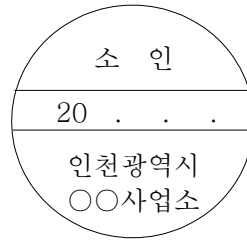
[별표 1]

소 인 규 격 (지름 2.5센티미터)

시



사업소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판매계약신청내용확인표

1. 신청내용

판 매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판 매 소 설치장소				

2.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결 과
가. 최근1년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없 음() 있 음()
나.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적 정() 부적정()
다.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적 정() 부적정()
라.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환경	주택가() 상 가() 도로변() 기 타()
마.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형태	소 유() 임 차() 기 타()
바 기타 참고사항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제 호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서

주 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계약 체결함

1. 수입증지판매소 위치 :

2. 직 업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관 매 인	소 재 지			
	성 명		생년월일	
	사유발생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환매)청구서

구분 권종	재고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No. 수입증지급(교환·환매)원부		
관 리 인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 행 년 월 일		

절

취

선

수입증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인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인천광역시금고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수입증지 수령증

구분 종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	매	원	
40원	매	원	
50원	매	원	
60원	매	원	
100원	매	원	
200원	매	원	
300원	매	원	
400원	매	원	
500원	매	원	
7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위 수입증지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금고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수 입 증 지 관 매 대 장

구분 권종 (원) 일자	매 입																관 매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구분 권종 (원) 일자	관 매										잔 고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개선권고) <div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작성”</div>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개혁을 위한 의견제시나 건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수입증지 환매금지 조항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철환